문제 2.

- 2.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원본과 증거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하라.
- 1)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증거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해당 증거 USB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한 서명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음.
- 다만, 예외적으로 원칙과 같은 방법에 의해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봉인·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증거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음의 연계보관성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2)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 준수

- 사본 생성 과정 중 이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사진·영상 촬영하고, 쓰기방지 장치 또는 (논리적) 쓰기방지 설정(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용/Encase Fastbloc SE 사용)을 통해 원본을 읽기 상태에서 사본을 생성함으로써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후, 사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입회인/참관인에게 서명날인을 받는다. 또한, 연계보관성을 위해 이미지 생성 이후 증거원본usb를 훼손방지/무결성 유지를 위해 충격보호케이스에 포장하여 상세정보(사건번호, 수집자, 입회인, 수집환경 등)를 기록한다. 이후 입회인/참관인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연계보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확인자의 서명을 받는다.

## 3) 자격을 갖춘 분석가와 도구의 선정

- 무결성 유지를 위해 분석가는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분석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일관성있게 도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